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498
----------	-----

2024. 1. 30.(화)  
정책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자 : 조성태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4년 1월 11일

다. 회부일자 : 2024년 1월 16일

라. 상정일자 : 2024년 1월 24일

- 제4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조성태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 내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-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

### 가. 제출배경

- 「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 및 「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추진하던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을 단독조례로 마련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 및 양육 부담 완화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1조는 다자녀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 및 양육 부담 완화 등에 기여함을 본 조례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이는 적절한 조례 제정 취지를 담고 있다고 판단됨.
- 안 제2조는 “다자녀가정”을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정의하고 있는데, 「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에서 명시되어 있는 “다자녀가정” 정의를 인용한 것으로 타당함.
- 안 제6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다자녀가정의 실태조사, 양육

및 보육 지원,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지원 등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음.

- 안 제8조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수립 등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.
- 안 제11조는 홍보에 관한 것으로,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이라는 본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홍보의 중요성이 인정되는바, 적절하다고 판단됨.
- 안 제12조는 모범 다자녀가정, 다자녀가정 지원에 이바지한 유공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경우, 다자녀가정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.

#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최근 정부는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 2자녀로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.
- 이에 발맞춰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2자녀로 명시하고, 충청북도 내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##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다자녀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 및 양육부담 완화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다자녀가정”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.

**제3조(도지사의 책무)**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,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지원대상)**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한다.

**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6조(지원사업)** 도지사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다자녀가정의 실태조사
2. 양육 및 보육 지원
3.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지원
4.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

5. 교육비 지원

6. 문화 및 복지 혜택 지원

7. 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입장료, 이용료, 주차료 등 감면

8. 공공요금 감면

9.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7조(다자녀카드 발급 등)** ① 도지사는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기 위해 다자녀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다자녀카드 가맹점 확대를 위해 실적이 우수한 가맹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다자녀카드 발급, 우수 가맹점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.

**제8조(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 운영)** 도지사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수립 등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.

**제9조(중복지원 제한)** 도지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다자녀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.

**제10조(업무의 위탁)**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1조(홍보)** 도지사는 각종 언론매체,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포상)** 도지사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1. 모범 다자녀가정
2. 다자녀가정 지원에 이바지한 유공자
3. 그 밖에 도지사가 다자녀가정 친화 분위기 조성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는 자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를 삭제한다.



## 관계법령

### □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·고령사회 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·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5조(국민의 책무) ①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
②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 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국가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

제8조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·지원하여야 한다.

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(이하 “이용권”이라 한다)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(아동의 친권자·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·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)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.

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·금액·방법,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9조(조사 및 연구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·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32조(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 □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인구정책”이란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자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가 수립·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.

가.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

나.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·문화·복지·주택·교통 등 관련 지원정책

다. 그 밖에 인구감소 및 유출 극복과 인구유입을 위한 각종 정책

2. “다자녀가정”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.

제8조(인구정책사업) ① 도지사는 인구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결혼·임신·출산·양육·유입인구에 대한 지원사업

2. 청년, 신혼부부, 고령자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

3. 일자리·문화·교육·복지·주택·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

4.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

5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

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<개정 2023.4.7.>

③ 삭제 <2023.4.7.>

## □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1조(다자녀카드 발급 등) ① 도지사는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기 위해 다자녀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다자녀카드 가맹점 확대를 위해 실적이 우수한 가맹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다자녀카드 발급, 우수 가맹점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.

##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 : 도내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
2. 비용 발생 요인 : 다자녀가정 우대정책 및 정책자문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발생
3. 관련조문

○ 안 제6조(지원사업), 안 제7조(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 운영)

### 4. 비용 추계결과

○ 추계의 전제

- 첫만남이용권(연간 둘째아 이상 국도비 추가지원금) :  $2,400\text{명} \times 1,000\text{천원} \times 80\% = 1,920,000\text{천원}$

\* 매칭비율('24년도 기준) : 국비 71%, 도비 9%, 시군비 20%

- 지원규모 : '24년 국비 내시 기준인원(둘째아이상 2,360명) 수준 반영

- 지원금액 : (첫째아) 2백만원 → (둘째아 이상) 3백만원 (**1백만원 추가지원**)

- 정책자문단 참석수당(연간) :  $100\text{천원} \times 15\text{명} \times 2\text{회} = 3,000\text{천원}$  (전액도비)

\* 참석수당 : 기본수당(2시간 이내) 100천원 / 인원수 : 통상적 수준의 위원회 구성원수 반영(15명)

- 다자녀카드 가맹점 표지판 제작('24.일몰사업)

·  $5,000\text{개} \times 3\text{천원} = 15,000\text{천원}$  (전액도비)

○ 추계 결과 : ('24년) 1,938,000천원, ('25년 이후) 연간 1,923,000천원 소요

\* 향후, 다자녀가정 지원시책 발굴·추진상황에 따라 비용추계 변경(증액) 가능

○ 재원조달방안 : 국고보조금 및 도비 등

### 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:천원)

구 분		계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
<b>세 입</b>		<b>9,630,000</b>	<b>1,938,000</b>	<b>1,923,000</b>	<b>1,923,000</b>	<b>1,923,000</b>	<b>1,923,000</b>
첫만남이용권 국고보조		8,520,000	1,704,000	1,704,000	1,704,000	1,704,000	1,704,000
지방세 수입		1,110,000	234,000	219,000	219,000	219,000	219,000
<b>세 출</b>		<b>9,630,000</b>	<b>1,938,000</b>	<b>1,923,000</b>	<b>1,923,000</b>	<b>1,923,000</b>	<b>1,923,000</b>
첫만남이용권 (둘째아 이상)		9,600,000	1,920,000	1,920,000	1,920,000	1,920,000	1,920,000
정책자문단 운영		15,000	3,000	3,000	3,000	3,000	3,000
다자녀카드 가맹점 지원		15,000	15,000	-	-	-	-
<b>재원 조달</b>		<b>9,630,000</b>	<b>1,938,000</b>	<b>1,923,000</b>	<b>1,923,000</b>	<b>1,923,000</b>	<b>1,923,000</b>
의존 재원	보조금	8,520,000	1,704,000	1,704,000	1,704,000	1,704,000	1,704,000
자체 수입	지방세	1,110,000	234,000	219,000	219,000	219,000	219,000